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7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이주영 · 이준석 · 이수진
천하람 · 최수진 · 김선민
전종덕 · 김건 · 박홍배
김용태 · 윤재옥 · 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AI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타 분야에 대해서는 생성형 AI로 광고를 제작한 경우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소비 연령이 전세대에 걸쳐있고 소비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생성형 AI 제작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의약품등의 광고에 있어 인공지능 등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항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⑦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 하지 못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⑥ (생 략) <u><신 설></u></p> <p>⑦ (생 략)</p>	<p>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u> <u>생성한 의사·치과의사·한의</u> <u>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u> <u>의약품등의 성능이나 효능 및</u> <u>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u> <u>인·지도 또는 인정하는 등의</u> <u>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지 못</u> <u>한다.</u></p> <p><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p>